

에너지절약 강화대책 (2단계 중 일부시행)

(자료 : 산업자원부)

1. 시행 배경

- 최근 국제유가가 Dubai유 기준 10일 이동평균(移動平均)이 29\$/b대를 지속하고 있어 1단계(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시책)보다 강도 높은 시책이 필요
- 에너지절약을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일부 에너지사용 억제 시책을 추진

2. 에너지 소비절약 강화 대책

□ 「천연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」을 산업체까지 확대(즉시시행)

- 대상 : 연간 LNG 1백만Nm³(약 800톤) 이상 사용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 대상 약 670개 사업장

- 지원 : 전년 동기대비 15% 이상 천연가스 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절감분의 20% 요금 할인

□ 신규 심야전력 신청 제한(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)

- 대상 : 50kW 이상의 전기보일러 · 전기온돌 · 전기온풍기 등
※ 고아원, 양로원,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시설 등은 제외

□ 정부 ·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강화(의무화)

- 공공기관내 난방과 함께 사용하는 개인용 전열기 사용 금지

- 정부 ·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10부제 강화

- 정부 · 공공기관의 직원 및 민원인 등의 10부제 위반 차량 출입을 통제

- ※ 제외대상 : 외교용 · 보도용 · 긴급용 · 장애인 사용 자동차 · 배기량이 800cc 미만인 경차 등

-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승용차 10부제의 참여를 적극 유도

□ 경제활동과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사용 억제

※ 「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·명령」 공고(7일간) 후 2003년 2월 18일 전
후 시행 예정)

○ 연말연시 등과 관련하여 가로수, 건물의 입구 등에 설치한 장식용 조명(꼬마 전구)에 대한
전기사용 제한

○ 자동차연료판매소(주유소, LPG충전소)의 옥외조명 사용제한

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(주간)는 소등

— 일몰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(야간)는 조명의 1/2만 사용

○ 백화점 등 대형매장의 영업시간외 외부조명과 자동차판매소의 실내 및 상품진열장의 영업시
간외 조명사용 제한

— 백화점 등 대형매장 :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 면적합계가
3000m² 이상인 대규모 점포 중 “대형점”, “백화점”, “쇼핑센타”

3. 향후 계획(시행 시기는 별도 통보)

□ 2단계 추가 조치(국제유가 지속 상승시)

- ① 호화 유흥업소의 네온사인, 도심경관(분수대·교량) 등의 조명(照明) 사용 제한
- ② 골프장, 스키장, 놀이공원 등의 에너지 사용시간 제한
- ③ 영화관, 대중목욕탕, 찜질방의 1일 에너지사용 시간 제한
- ④ 편의점 및 상점의 실내조도(室內照度) 제한
- ⑤ 고속도로 등의 휴게소 옥외조명 사용 제한
- ⑥ 도로 과다조명 소등 실시
- ⑦ 승강기 3층 이하 운행금지 및 4층 이상 격층(隔層) 운행
- ⑧ 승용차 10부제 전면 강제 시행

□ 3단계 시행 방안(미·이라크 전쟁 발발시)

- ① 에너지 대수요처에 대한 수요관리 및 사용제한 확대
 - 놀이공원, 위락시설 등 에너지 다소비처의 에너지 제한 공급
 - 약 400개 기업체와 계약에 따라 전력 직접부하(負荷)제어 실시
 - 지역난방(地域暖房) 제한 공급
- ② 최악의 상황 발생시 에너지공급 제한
 - 석유수급 조정·명령 및 배급제 검토 시행
 - 전력 제한송전 검토 시행 ■